

‘인권의 정치’를 위한 공화주의

이재호

진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정치사상 전공

millrhee@daum.net

- I. 머리말
 - II. 인권의 지형과 공화주의
 - III. ‘인권의 정치’와 공화주의의 상호성
 - IV. 한국에서 ‘인권의 정치’를 위한 공화주의
 - V. 맺음말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B5A07918934).

I. 머리말

현재의 한국은 사회경제적 이익을 독점하고 있는 거대기업군들과 보수적 매체, 냉전적 보수의 의회와 사법체계는 민주공화와는 유리된 사회구조로 되어있다. 그래서 이 글은 자의적 지배가 없는 공화주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인민이 차별 없이 개입할 수 있는 인권의 정치에서 발원한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의 경제적 상황은 OECD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선진국이다. 그러나 정치 사회적인 조건과 불평등은 결코 선진국이라 할 수 없는 '인간 조건'의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간실존'은 너무도 불안하고 불공정한 현실이다. 정치적 대표체계와 사적 지배 관계의 제어가 상호 규정력을 가질 필요성은 이제 긴요하다.

인권의 근대적 전개 과정은 필연적으로 정치체를 형성하는 국가와 사회의 관계 양상을 둘러싸고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자유와 민주에 이어지는 공화주의로의 기획은 인권을 통한 적극적인 자유의 실현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이 전제로 하는 인권정치는 인권영역의 현실 인식과 인권신장을 위한 실천의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즉 인권정치는 특정한 인권상황이나 조건 속에서 전개되는 주체들의 행위와 이와 연관된 사회적·정치적 관계의 총합이다. 한국에서 공화주의에 대한 논의는 거둬들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안주하는 즉, 미국학계의 공화주의적 수정주의만 편향되게 수입하거나 논의하려고 하므로 한계를 갖고 있다. 인권을 위한 시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하는 공화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규범에 대한 해석을 독점하거나 중립화하는 작업은 특정 시공간에서 특정한 태도를 승인하는 은폐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치사상이나 철학은 전통이 주는 권위를 무조건적 수용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새로운 경험, 혹은 진정한 정치적 경험을 담은 새로운 범주와 개념을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이 목표다.

이런 맥락에서 이 논문은 인권영역의 동태성을 유지하고 확장하는데 인권정치가 기획해야 할 정치형태를 공화주의에 의존하고자 한다. 정치공동체의 규범이 억압 기제가 아닌 공공선과 개체성이 실현되는, 정치적 능력과 행사의 동등성과 참여와 비지배가 핵심인 공화주의는 엘리트주의와 책임성에서 유리된 대의제를 대체 및 보완할 수 있는 정치형태가 될 수 있다. 한국에서 공화주의의 논의는 미국정치의 로크식 원칙이 개입된 '공화주의적 수정주의'와 '자유주의적 공화주의'의 소개와 적실성만을 부여하려는 무리한 시도에서 활발한 '삶의 현장'에서 실천적 함의를 갖지 못하고 이론적 논의에 그치고 만다. 즉 인권을 위한 정치와 제도의 논의가 아닌 주어진 규범을 어떻게 정당화하느냐에 논의인 '자유민주주의'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실패는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었다.

서구사회는 다양한 갈등을 수용함과 동시에 이에 적실성을 갖는 이론을 섭렵하려고 한다. 그러나 정치·경제적으로 상이한 경로를 걸어온 한국사회에 서구의 이론과 분석을 '문제의 진단과 처방, 그리고 치료과정'까지 서구의 경험과 이념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실수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게 더 큰 오류다. 헌법의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시민"인데 이에 대한 승인과 투쟁은 제한되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의 빛과 그늘, 밝음과 어둠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엘리트와 대중, 집단과 집단, 지역과 지역 간의 극히 상반되는 현실 모습은, 인간적인 공동체의 건설을 위한 좀 더 발본적인 해법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사회의 문제를 사실적 객관성과 실현 가능성의 범주로 접근할 때 개혁과 혁명, 그리고 변화에 대한 제도요인에 착목하게 된다.

본 연구는 오늘날 우리 한국사회의 주체성과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인권에 기초한 공화주의를 강조하고자 한다. 인간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를 통해서 공동체의 문제를 논의함에 공공선을 우선하는 권리의 정치를 실천하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 학계 일각에서 강조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심화'나 합리화, 즉 '민주주의의 민주화' 등을 통한 접근방식은 그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개체는 존엄하고 이 존엄한 개인은 결코 공동체와 분리된 개체가 아닌 상호성을 갖는 개체여야 한다는 것, 인류의 역사는 인권과 이에 대한 반응으로 법의 갈등이 축소되거나 확장되는 시공간의 장이었다. 이제는 근대적 국민국가의 문제 설정인 국민주권을 넘어 '인권'의 개념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적 주권을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의 개인화된 '삶의 방식'이 개인의 책임으로 치환된 공공의 과제에서 부상되는 문제는 인권의 정치를 통해서 그 실현 이념은 공화주의에서 그 실천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민주주의의 원칙은 개인의 자격은 인권에 의해 특별한 능력이나 자격이 필요하지 않고 운영은 법치 때문에 모두가 참여하는 해법을 공화주의에서 채택함으로써 자유주의의 편협한 작동을 변경한다는 기획이다. 새로운 갈등과 가치의 충돌과 공존은 인권의 정치에서 그 가능성과 실현성이 모색된다. 그래서 출현한 공화주의의 이상은 공허한 당위론도 아니며, 현실에서 무력하지도 않다.

본 글에서는 민주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공화주의를 대립개념으로 상정하지 않는다. 시대와 상황에 따른 긴장 또는 결합되어야 하는 원칙으로 본다. 또한, 인권의 상황은 종결적이 아닌 현재진행형이나 미래에 출현할 가능성이 큰 영역이기에 이를 실현할 공화주의에 대한 정치적 원칙을 고민하고자 한다. 그래서 공화주의는 다른 모든 원칙이 파생되고 그 내용이 좌우되는 이념적 좌표 또는 제1원칙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II. 인권의 지형과 공화주의

1. 인권이 곧 정치다

인권은 자연법적 토대에서 출발하던 정치적 투쟁의 결과물로서 인식하던 “인간은 자기 지배의 원리로 그 존재 자체로 인정되어야 하며 타자로부터 어떤 가치나 이념에 강제되지 않는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할 수 있다.¹ 이 인권은 정치 이후의 권리이며 공동체적 속성과 때론 대결적이지만 공동체 능력과 규범력의 영향 아래에 있게 된다. 또한, 사회계약론적 입장에서의 정치적 주권의 문제와 관련한다. 역사적 과정은 인권의 관념과 그 구체적 내용이 추상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당면한 정치적 주권의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변해왔기 때문이다.

인권은 자연성과 평등성, 그리고 보편성과 존엄성을 인간 각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다. 이 권리는 방어적이거나 배타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공적 토의의 행위를 통해 그 권리의 정당성이 성립되는 것으로, 또한 보편성은 어떤 기준이나 원리라는 실체가 아니라 서로 간의 논의 과정 자체에서 나온다…….² 권리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타인이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단지 타인들의 태도를 개인이 채용하는 과정일 뿐이다.³ 그러므로, 인권의 기반이 개인에게 있지 않고 사회에 있다. 권리투

1 이재호, 「근대적 인권 이념의 기초와 한계」, 『정신문화연구』 제29권 제3호 (2006), 198쪽.

2 박주원, 「인권의 ‘정치적’ 재구성: 자유권, 사회권을 넘어 정치적 권리로, 국민주권을 넘어 새로운 정치적 주권을 향하여」, 『현상과 인식』 제37권 4호(2013), 31쪽.

3 George Herbert Mead, *Mind, self, and society: from the standpoint of a social behaviorist*(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34); 나은영 역, 『정신·자아·사회』 (한길사, 2010), p. 294.

쟁이나 승인이 아닌 인간이 생존하는 것 자체가 제일의 과제가 될 때, 삶의 목표가 살아남는 것이 될 때, 타인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작아진다. 그리고 이 경우에 ‘너와 나’, 혹은 ‘우리’는 존재할 여지가 없게 된다. 이는 인권을 인간의 물질적 존재 상황, 인간의 가치와 욕구, 그리고 여러 사회세력이 맺는 역학관계를 통해 구성되는 정치적·사회적 실천의 산물로 인식하도록 한다. 너와 내가 ‘거리’를 갖는 자율적 주체이면서도 내가 너에게 내가 내게 시민적, 인간적으로 힘이 되는 삶의 동료애를, 같은 정치공동체 안에 터 잡고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적, 인간적 동료애를 갖고 있는가. 신자유주의 체제에 살고 있다. 이 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차별적 배제에 있다.

한국에서 인권침해는 구조적이다. 우선, 인권침해가 이뤄지는 첫 번째 요인은 가부장적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 개체성의 승인을 불가능한 구조임과 동시에 아주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주의였다. 개체성이 부재한 조건에서 사회 관계적 승인과 존중은 어쩌면 당연했고 자신을 넘어서 타인의 관점에서 세상을 조망할 원형질은 존재할 수 없었다. 두 번째는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이 가져오는 인권에 친화적인 이념이 자리할 시공간은 불가능했다.⁴ 또한, 친자본주의적 영향으로 자리한 시장주의는 결과와 효용의 극대화 원리만 강조할 뿐 노사 간의 조화와 거대기업군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은 불가능했다. 한국 사회는 산업화 이후 초극단적 경쟁이 사회발전과 인간발전의 효과성만을 기대했기 때문에 강자와 지배자의 논리만 남게 되는 사회 다원주의는 설 자리가 없었다. 이는 엘리트들에 의한 의제와 가치의

4 국가안보의 강조는 집단주의와 국가주의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오늘날 ‘국가안보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절대적인 신념체계가 되었다. 한국에서 반공주의와 결합한 국가안보주의는 그 어떤 이념보다 인권을 질식시켰다. 조효제, 「한국의 반공주의와 인권」, 김동춘·기외르기 스텔·크리스토프 폴만 외, 『반공의 시대: 한국과 독일, 냉전의 정치』(돌베개, 2015).

독점, 그리고 한국적 대의제가 갖는 이익과 권력, 그리고 이념만을 추구하는 권력정치에 의해서 '공론장의 부재'라는 정치의 실종이 가져온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러한 구조적 폭력이 행해질 시공간을 해소할 인권 보호와 이를 보장할 사회적 의식이나 법률적 장치나 제도는 지극히 미비했었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를 시작으로 인권에 관한 인식들은 마련되었지만, 적대적 차별이나 편견에 대한 법률적, 윤리적 억제장치가 미흡한 상태다. 한국 사회는 구조적인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정치 문화적 엘리트 중심주의가 갖는 구성상 특성은 인권 친화적인 규범화로의 이행엔 미흡한 상태다. 형식적 평등의 한계원리에 실질적 평등이 포섭되어 엄격히 그 한계 속에서만 기능할 수밖에 없었다. 사회규범이 권위적일수록 사회적 약자나 인권에 대한 친화성은 감소할 것이며, 시민의식 수준과 사회제도의 민주성이 높다면 인권침해는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사회경제적, 혹은 정치문화적 인식이나 제도적 틀 때문에 가능하다. 반면에 국가기구의 설치와 정치의 민주화와 시민의식의 성장과 이에 따른 사회적 다원화는 인권의식과 인권발전에 기대감을 높여줄 수 있다.

한국 사회는 동일한 언어와 민족, 그리고 엘리트주의적 사회체제와 가족주의에 기초한 집단성에 의해서 인권에 적대적이거나 소극적인 구조가 일반화되어 있다. 권리는 단지 선언으로 향유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배 대 해방, 소수의 자유 대다수의 자유 사이의 역동적 쟁투의 동학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창조되고 인정된다. 한국의 정치사에서 민(民)이 정치의 주체로 역할 했던 점이 부재하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민적 주체는 사익을 추구하는 소수의 특권과 기득권 세력의 지배체제에 대항하는 싸움을 통해서, 지배체제를 균열시키고 그 벽-그 균열된 지배체제의 벽-과 경계를 허무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 구성된다. 평등, 자유,

정의, 연대, 공동선은 이러한 쟁투의 과정을 통해 창출되어왔다.

인권과 주권은 모든 정치적 행위들을 규율하는 “살아있는” 규범체계이다. 주권은 국가 내의 권력기관들 정당화하는 원리로 존재할 게 아니라 그것들을 통제하고 제어함으로써 국가이성과 국가 정당성의 범위 내에 존재케 하는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띠게 된다. 투쟁이 아닌 수입에 의한 주권의 형성은 결국 국가의 전유물이었기에 법치도 국가주의일 수밖에 없었다. 국가권력이든 사적 권력이든 분산되고 분립되었을 때 또 사회조직이 수평적일 때 인권이 보호될 개연성은 커진다. 그래서 인권의식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당연시하는 현실을 적절히 문제화할 수 있는 눈을 길러 주고, 존재하지만 인지하지 못했던 부적절한 상황과 조건을 직시하게 해주는 능력을 키워준다. 또한, 구조적 폭력의 피해자가 인권에 호소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인권의 제도화는 인권의식과 수준을 향상시키는 척도가 되며, 공식적인 법률로 제정된 인권의 내용을 의미한다. 제도를 공식적인 법규범으로 보면 제도화는 결과물로서 입법뿐 아니라 결과물인 입법의 절차와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제도는 단지 법규범을 제정하는 과정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닌 문화와 가치의 변동이나 변화를 견인하기 때문에 ‘제도’와 ‘제도화’는 사회변동까지 포함할 수도 있다. 인간이 의도치 않는 우연성에 의해서 제도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의도와 선호를 반영하는 의식적인 산물이 제도와 제도화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좋은 제도는 조직과 사람들의 행위를 긍정적으로 유도해내는 함의를 갖지만 좋은 제도란 미리 설정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인권은 모두에게 법적 제도화를 도덕적 의무를 지우는 일이라 할 수 있다.

2. 공화주의의 재개념화

공화주의는 특정 지배세력이나 이념에 한정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의 문제를 심의하고 결정하는데 누구라고 해서 배제하고 억압하는 게 아닌 누구나 참여해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비지배적 속성’과 ‘비지배적 자유’를 내용이자 핵심으로 한다. 그래서 공화주의는 인민에 기초하며 누구나 타인의 자의적 개입 없이 그와 그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 개입 가능성과 어떤 행동을 구체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구체화를 한다. 그러므로 공화주의에서는 인권을 위한 확정적인 인권의 보편성을 갖지만, 특수한 인권만을 승인하지도 않는다.

결국, 공화주의는 정치적 자유, 동등한 권리로써 정의, 우정, 법치, 공공선, 등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더 핵심 쟁점으로 들어가 말하면 공화주의는 한편에서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공의 일에 관심을 두고 공공선,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는 것을 기본가치로 삼는다. 또한, 공화주의의 또 다른 기본가치는 지배로부터 해방된 정치적 자유와 동등한 권한이다. 결국, 공화주의는 특정 국가의 구성원이 자의적인 지배에 예속되지 않고 동등하고 자유로운 주체들로서 공통의 공간을 구성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⁵ 그러므로 정치체제에서 분리된 개체는 인간다움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 인간은 정치행위를 통해서 실천적 지혜와 탁월성을 발휘할 기회를 얻기 때문이다.

현대적 공화주의의 핵심인 ‘비지배적 상호성’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5 공화주의에서는 진정한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의에 종속되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 키케로는 “..... 그렇지만 왕의 치하에 있는 인민들에게는 전체적으로 많은 것들이 결핍되어 있는데, 우선 자유가 없다. 그것은 우리에게 정의로운 주인이 있을 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아무도 없을 때에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Marcus Tullius Cicero, *De re publica*, II (23)(번역은 Cicero, 김창성 역, 『국가론』(한길사, 2006), 186-187쪽 참조).

구체화하면서 고전적 공화주의를 승계하는 동시에 새롭게 재개념화된다. 첫째, 자유로운 행위가 아니라 자유로운 행위가 가능한 조건이 개인뿐만 아니라 정치 집단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조정원칙이다. 둘째, 비지배적 상호성은 국가로부터 동일한 대우를 보장받는 소극적 시민성에서 사회적 권리의 제도적 보장을 통해 실질적인 정치적 견제력을 보장받는 민주적 시민성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한다. 비지배적 상호성에서 자유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전제조건이다. 이러한 전제조건은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 시민에게 부여될 때 확보된다. 셋째, 비지배적 상호성은 원칙의 반복된 적용을 통해 '타인의 자의적 지배로부터의 자유'가 시민들의 행위의 준칙으로 내재화되는 과정을 또한 하나의 목표로 상정하고 있다. 이때 비지배적 상호성은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개인(또는 집단)과 국가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일관된 정치적·도덕적 판단근거로 전환된다.⁶ 그러므로 오늘날 재개념화한 “비지배로서의 자유”는 공화주의 국가에서 허용된 삶의 선택들을 조건에 맞게 규정하는 것이며, 비지배는 개인들과 공동체의 목적이 타인들의 삶에 임의적인 간섭 없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구상하는 것이다.

민주정과 공화주의를 적절하게 결합한 방식이 오늘날의 대의제인데, 이 자체가 공화주의의 개인의 권리와 참여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즉 대의제의 구조적이고 구성적인 한계는 국가적 혹은 시민적 투입에 대한 산출의 미흡으로 드러나는 등 대의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세습이 아닌 선거를 통한 능력으로 인민들에게 선택된 '자연귀족'에 의한 통치를 승인하고, 탁월한 사람이 인지될 수 있는 자유와 공공선의 창출을 위한 양질의

6 박준혁,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3호(2005), 500-551쪽.

심의를 보장받으려는 고전적 공화주의의 접근도 인민주권과 친화적이지 않다. 시민의 이해를 위해서 봉사하고 책임을 지며 통제를 받지만, 책임과 반응성이 부재한 권력행사로만 대체되는 게 현재의 대의제다. 오늘날 대의제에서 대표자의 행위는 단순한 대행이 아니라 완전히 자율적이기에 시민과 분리된 의제와 의사결정과정을 갖는다. 게다가 선거로 당선되는 대표자들이 그들의 시민들보다 더 현명하고 지혜롭다는 전제를 만족시켜주는 것도 아니다. 대의제의 전제가 대중들은 그들의 문제에 토론능력과 심의할 능력이 없다는 가정이라면 폐기되어야 한다.

엘리트들은 공화주의적 논의와 재구성이 가져오는 결과를 민주와 참여의 과잉이 가져올 위험을 경계한다. 특히 공화주의가 불평등을 통제하려는 의지를 갖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권의 보편성의 한계인 소유를 기반으로 하는 계급적 차이가 인권의 보편성을 확보했고 오늘날 기본권과 법률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는 불균등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력의 불평등성이 그 출발지다. 그래서 인권을 자연법적 원리에 의존하는 무제약적인 것이 아닌, 사회 체제를 구성하는 중층성과 상이한 가치관에 따라 바라보아야 한다는 인식이 제기된다. 다원화되고 다양화된 개체들의 현재의 문제를 담아내기 위한 동태적 정치과정과정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부단한 구성의 정치로서 ‘공화주의화’(republicanization)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 영웅이나 지도자 1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다수가 모두 포함되는 사람들에 의해 특수한 맥락에서 무엇이 올바른 일인가를 판단할 때 이성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동시에 다른 원칙들을 심의를 통해 드러나게 하는 원칙이어야 한다.

공화주의가 지향하고자 하는 생활관계는 어떤 관념화되고 범주화된 권리의 실천이 아니라 개개의 삶의 과정 속에서 자유와 변형을 구가할 수 있는 공동선의 실천이다. 서구의 갈등처리 과정과 행태에 대한 분석적

토대도 없이 한국에 이식 내지 적절성을 고민하지도 않는 채 합리화에 몰두하다 보니 서구사상은 한국에 체화되지 않고 이물질처럼 더부살이하고 있다. 정치적 관념이나 사상은 특수한 상황에 대한 그 시대 인간의 반응이라는 처방이기에 단순 연구로는 부족하다. 정치와 경제 및 사회의 언어는 그 시대의 특정한 국면을 해석하는 언어다. 따라서 권리와 자유는 생활이라는 실체를 가능케 하는 일련의 인간관계를 의미하게 되는 절차나 과정을 중시한다. 공화주의의 기본이념인 개인적 자율성이란 목표의 획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표의 선택에 놓여있다.⁷ 여기서 정치적 자유는 집단적 자기결정을 향한다. 정치는 개개인들의 신호가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시공간에 따른 의제나 담론의 대화와 토론의 대상이며 부단히 변경되고 계발되는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Ⅲ. ‘인권의 정치’와 공화주의의 상호성

1. ‘인권의 정치’에 대한 시각과 원리

정치가 체제의 존립 근거로 세워야 하는 것은 현실에 팽배한 실질적인 불평등을 없애고 갈등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른 정치적 사유는 단순히 기술적인 태도나 접근을 거부하고 바람직한 인간, 자유, 정치(행태, 국가형태)가 무엇인가라는 규범적인 질문과 답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정치는 ‘진리의 영역’이 아니라 수많은 의제에 대한 수많은 ‘의견들이 제기되고 수렴되는 공간’이어야 한다. 단일의 이념적 관점에서 규범해석을

7 한상희, 「민주공화국의 의미: 그 공화주의적 실천규범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학연구』 제9권 제2호(2003), 27-91쪽.

강제하는 것은 이념적 폭력이다. 동시에 헌법이나 규범에 대한 해석과 내용에 관한 토론은 이념적 대립의 장이자, 이는 내일에 대한 성찰과 충전작업이 될 것이다. 시대와 장소, 그리고 문제의 행태에 따라 어떤 것이 더 적실성을 갖는가는 달리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곧 민주적 정치과정에서 선택될 문제다.

인권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인권의 정치를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인권의 정치'는 도덕적 열망이자 진정한 국민주권의 실현이다. 이는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을 자유와 평등의 행위 영역에서 가능하게 이룬자이다. 인권의 정치는 담론과 행위의 영역 사이의 구분을 제거하는 것이자 모두를 위한 모두에 대한 자율성과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인권은 합당한 정치적 의지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적 조건을 법적으로 제도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인권은 모든 인격체와 관계되고 그 정당화를 위해 오직 도덕적 논증에만 의존하는 한에서 도덕규범과 유사하다. 보편적 인권이 전제하는 인간관은 보편적 인간이지 다양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구체적 인간은 아니다. 즉 자신의 정치적 지위와 입장을 주장하면 빨갱이나 반역자가 아닌, 억압에 저항하는 것은 인간의 의무이자 도덕적 힘이다.

인권의 정치는 정치문화가 설정하는 경계선을 넘어서는 인권이 시민권으로 실현되는 것을 모색한다. 보편적 인권은 전(前)정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본래적인 정치화의 적실한 공간을 형성할 수 있는 공동체 내에서 속하는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권의 정치는 주체화의 양식으로서 정체성의 정치와 결합된다. 시민권이 없다면 인권이 없는 게 현실정치다. 그래서 인권 개념의 현주소는 국민국가와 국민주권이 작동하는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공동체 내부의 사람이 그 대상이다. 인권이 부재하다는 것은 자신이 속한 국민국가가 상실되었다는 의미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없다면 자신이 지배를 받게 될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이 거주할 장소의 규범적 승인이 부재할 수밖에 없거나 투쟁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근대 이후 국민국가 상황에서는 국민국가를 갖지 못한 것은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인권이란 '권리를 가질 권리'인 정치적 삶의 범위와 수준과 일치한다.

인민들을 자유롭게 하거나 구속하는 권리들은 각 개인 사이의 상호호혜성을 전제할 때만이 권리획득이 가능하다. 이 상호호혜성의 가능성은 '보편적 진리'에서 발견된다. 이 보편성은 '인간과 시민의 동일화'와 '평등과 자유'의 동일화이다.⁸ 또한 '인간의 권리(자연적 권리)와 '시민의 권리'(실제적 권리)는 어떤 차이도 없는 동일성을 갖는다. 즉 인간은 국가의 성원인 시민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권리를 무한히 확장해가는 정치를 '인권정치'라 한다. 인권정치는 불평등과 부자유에 대항하여 인민이 자기 해방을 위해 일으키는 개별적이거나 집단적 행동을 말한다. 이러한 인권정치 상황은 항상 반복되고 영속적 긴장이 존재한다. 그 이유는 인권정치는 정치의 자율성⁹이며, 정치를 정당화하는 자연적 권리를 인간들의 자기 해방의 권리로 전환함으로써 자유와 평등을 제한하는 사항을 극복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인권의 정치'에 대한 두 가지 접근법은 두 가지 시각과 원리를 갖는다. 첫째, 제도정치 공간에서 대의되지 않는 주체들에 의하여 실천되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원리다. 연대의 형식으로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반대'를 주장했던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의 해고자들은 모두 대의제라는 제도정

8 에티엔 발리바르,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 평등과 자유의 현대적 변증법」, 『'인권의 정치'와 성적 차이』(서울: 도서출판 공감, 2003), 9-37쪽.

9 발리바르는 정치를 자율성을 획득하는 과정이라 하고 있으며 자유와 평등의 제한을 극복하는 것이라 했다. 에티엔 발리바르(2003), 위의 논문, 24쪽.

치 공간의 합의 과정에서 대의 불가능하거나 대의되지 않는 자들이었고, 권리를 박탈당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배제된 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주장하며 기존의 합의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주체가 형성되고 '민주제'라는 말의 본래 의미에 부합하는 정치가 발생한다.

둘째, 민주정치를 기초로 하는 정치공동체의 구성원리로서의 '인권'의 이념과 가치 확립이다. 한국 사회에서 대항적 실천으로서의 인권은 발전을 이루어왔지만, 인권의 가치가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구성원리로 뿌리내리는 노력을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원리로서의 인권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재구성하는 '내재적 비판'을 수행하고, 내재적 긴장과 갈등을 창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크게 기본권과 국가권력 구성원리로 이루어져 있는 헌법은 기본권과 국가권력 간의 적극적인 연관을 읽어내는 해석방법을 취해야 한다. 그러한 해석에 따르면, 국가권력은 인권(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담지해야 하고, 이러한 원리는 정부, 국회, 법원 등 국가기구를 구성에 대한 지배적인 원리가 되어야 한다.

2. 인권정치의 공간적 지점들

정치 공간은 관계의 산물이기 때문에 물질적·비물질적 실천들을 이끌어 내기도 한다. 이는 공간이 인간의 존재를 물질적 상태만이 아니라 신체적·심리적 차원의 문제로 확대시켜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¹⁰는 것이다. 인권에 대한 공간적 지점에 대한 인식적 전환은 모든 시공간에서 인권이 친화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제도와 가치가 반영될 수 있는 공간이

10 김기곤, 「인권정치의 공간적 해석」, 『민주주의와 인권』, 제10권 2호(2010), 68쪽.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와 '국가' 혹은 '정치'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의미였던 고대의 모습들이 오늘날 동일한 재현이 필요한 게 '인권정치'의 요청이다." 한국 정치에서 주체는 엘리트와 국회의원, 그리고 관료와 대통령이다. 그래서 시민은 권리는 박약하지만 따라야 할 의무는 강력하다. 이에 반해서 정치 주체들은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다. 의무 없는 정치행위로 인해서 자율이 제한된 시민은 통치 대상화될 수밖에 없다.

정치공동체에 소속된 구성원이면 누구나 정치적 주체인 동시에 개인적 삶의 자율적이고 존엄한 주체로서 평등한 참여자의 몫을 갖는 정치, 즉 누구든 동등한 정치적 주권을 보유하는 '공적 시민'으로서, 그리고 기본적인 권을 '사적 시민'으로서, 보편적이고 완전한 성원 지위를 갖는 정치, 인간답게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 목록과 함께 그것에 상응하는 책임을 갖는 정치다. 그러나 자유주의 사회에서 사회의 전체적인 부는 증가하지만 불평등하게 증가하고 있다. 결국, 자유주의 사회는 스스로 주장하는 것과 반대로 사적 자유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자연상태와 다름이 없음을 보여주는 있다. 그런데 이는 공적 영역이 소멸하면 사적 영역도 소멸한다는 사실을 자유주의자들, 또는 자유주의 사회가 간과하거나 애써 부정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결핍이나 외부화되는 이유는 남북분단 구조에서 사회주의적 이념이나 복지담론에 대한 통제 내지 취급 불가로 규정지은 점에서 기인한 사회주의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가 높지 않았던 점이 만들어내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권리의식이 미약하였고 정치적 민주화에 집중하느라 사회적

11 그러나 자연법과 국가와의 관계는 통합된 개념이나 유기적인 것이 아닌 국가는 하나의 인위적인 권력실체를, 자연법은 보편적 규범을 의미하는 대립적인 개념이었다. M. Riedel, *Materialien zu Hegels Rechtsphilosophie*, 2 Bde. Frankfurt/M. 1974; 황태연 역, 『헤겔의 사회철학』(한울, 1988), 118-121쪽.

평등에 대한 세력화의 여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형식적 평등의 한계를 보충하기 위해 실질적 평등이 기능한다는 것은 형식적 평등의 한계원리에 실질적 평등이 포섭되어 엄격히 그 한계 속에서만 기능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인권의 박탈(공적 영역의 상실)은 한 인간을 의견도 없고, 직업도 없고, 정체성도 없는, 순수한 인간, 즉 자연적인 차이(예를 들면, 인종)만을 가진 ‘인간’으로 만들어버린다. 우리는 서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우리의 결정의 힘에 기초하여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평등하게 된다. “정치는 몫을 갖지 못한 자들의 몫을 창설함으로써 지배의 자연적 질서가 균열되고 있는 바로 그때 존재하는 것이다.”¹² 인간적 기능의 전문화는 대중과 엘리트의 간격을 유지한다. 이는 대리인을 호출하여 전문가들에게 정부를 관리하게 하여 대중은 피동적으로 자기 영역에 집중케 한다는 효율성과 합리성이지만 사실 이는 대중을 의사결정에서 배제시켜 자치권을 삭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오늘날 민주정치의 과제는 파괴할 정언명령과 준수할 정언명령을 유형화해야 한다.

인권의 정치에서 논의되는 시공간적 인권의 내용은 고정적이지 않다. 어제의 추상적인 권리가 내일은 소중한 인권의 범위로 포함될 수 있으며 오늘의 권리가 내일은 상식이 될 수도 있다. 인권의 내용과 대상은 확장 및 심화되고 있다. 인권 현실과 헌법 규범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로 표현해 규범체계의 불완전성과 미완결성으로 하고 있다. 추상적일지라도 존중될 인권의 내용은 실현되어야 할 목록에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일하게 헌법은 기본권의 철학적 정당화가 완성된 교범이 아닌

12 Jacques Rancière, “Who Is the Subject of the Rights of Man?”, *South Atlantic Quarterly*, 103(2-3), 2004, p. 299.

그 정치적 실현을 위한 일시적인 문서다. 그 문서로 모든 정치과정이 정지되는 게 아니라 특정 정치적 의제가 없다면 그 내부의 문제들의 토론과 심의의 공간이 될 수 있어야 한다. 헌법이 국가 내부 개인의 존재를 규정하는 구조적인 사회적 불평등 문제는 사소한 채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기회의 보장만으로 규범상의 평등가치를 구현할 국가의 의무가 종료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민과 관련된 개념들은 무수히 많은데,¹³ 민이 공동체 안에서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낮은 지위에 처해 있다 보니 대부분은 그 개념들에는 부정적이고 비하하는 이미지가 결부되어 있다. 인권의 정치를 위해서 한국 정치의 시공간은 노동관계와 정치관계, 그리고 사회관계에 국한되지 않는 삶의 전체의 공간에서 재조정되어야 한다. 우월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귀족이나 엘리트는 ‘민’의 이름에 경멸적인 의미를 부여하려고 애썼고, 또 자신들이 민과 관련되는 것을 꺼렸다.

이제 민주정치의 과제는 국가영역에 있어서의 자치(공적 자치)와 사적 영역에서의 자치(사적 자치)를 동시에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제 시민사회적 민주정치로 자유롭고 평등한 방법으로 민주정치의 내용을 결정하여 가는 자율사회를 추구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결정 과정에 평등한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집행이란 집행이라 할 수 없고, 제정과정에서 평등한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법이란 법이라 할 수 없다.¹⁴ 올바른 사회는 올바른 법을 채용한 사회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가 끊임없이 열린 채로 논의되는 사회다. 공화주의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자유와 평등은 의회와

13 민(民)은 데모스이며 귀족이나 엘리트의 대립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민의 개념 정의를 통해서 민주정치를 고찰하는 논의는 민주정치의 발전과정으로 이해해도 될 듯하다. 신철희, ‘민’(demos) 개념의 이중성과 민주주의(demokratia)의 기원, 『한국정치연구』 제22집 제2호(2013),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7쪽.

14 C. Castoriadis, “Sur le Contenu du Socialism”, *Le Contenu du Socialism*, Edition 10/18 1979, p. 26.; 이경주, 「시민사회적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법학』 18호(2000), 77쪽.

같은 기구가 법적으로 제도화된 절차에 따라 의견을 형성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비국가적 공공영역에서의 의사소통의 자유와 평등까지를 의미한다.

대의제의 동태적인 재구성이 필요하다. 대표들만의 획일적인 문제 제기 와 의사결정과정에서 벗어나 민중적 동력의 지속적 투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일성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과 다양화와 다층화된 개인주의를 사회구조의 이해관계 속에서 표출해낸다는 것은 관념상으로는 가능할지라도 실제에선 여전히 어렵다. 현상을 설명할 수도 없고, 대안을 제시할 수도 없는 이론과 제도는 과학적으로 실제적으로 효용성을 상실한다. 대표에게 책임성과 반응성 등을 묻는 제도의 원리는 민주정이라기보단 공화주의에서 발원하는 것이다. 나아가 인민이 일상에서 자신의 존재를 일깨울 수 있는 제도의 원리가 개입될 수 있는 게 공화주의다. 탁월한(?) 엘리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투표뿐만 아니라 일상적 정치과정에 상시적으로 인민이 집단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이는 인기영합주의를 가져오는 게 아닌 정치적 담론의 획득과정이다.

3. 인민주권과 비지배로서의 공화주의의 실천가능성

인간 및 인권은 선형적으로 규정된 어떤 것이 아니라 규정되고 또다시 재규정되는 지속적인 ‘발견’과 ‘발명’이다. ‘이전에 존재했던’ 권리들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현재를 보장해주는 본질로 간주할 수도 없다. 어떤 공화주의적 개념에 의존하더라도 그 원리는 덕성보다는 타자에 의한 비지배적 속성을 타파하고 비지배적 속성을 갖는 개인들의 상호의존과 연대다.¹⁵ 그런데 공화주의가 갖는 역사적, 정치사회적 경험에 따른 결과물이기 때문에 유형별 논쟁은 한국에서 그 적절성은 크지 않다고 보인다. 현재

한국에서 규범적 의미는 추상화에 국한되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공화주의가 갖는 유의미성은 시민에 의한 일상에서 헌법적 규범의 논의 가능성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로마공화정이 귀족적인 속성을 가졌지만, 제도적, 혹은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은 그들이 상호성의 원칙과 신뢰가 핵심적인 구성요소였다는 점이다.

선슈타인(Cass Sunstein)과 마이켈만(Frank Michelman)¹⁶은 공화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첫째, 정치가 공민적 덕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토의가 필요하다. 둘째 정치는 참가기회와 영향력에서 평등하여야 한다. 셋째, 정치적으로 평등한 자들에 의한 토의를 통하여 정치가 이루어지면 올바른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넷째, 따라서 시민의 정치적 참가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¹⁷ 이러한 관점에서 선슈타인은 사법심사를 높이 평가하고 적법 절차조항과 평등 보호 조항을 정치적 토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치 지워야 한다고 평가한다.¹⁸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덕뿐만이 아니라 대표들의 덕과 참여의 기회가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과 평등이라는 점이 강조된다면 인권의 정치와 공화주의는 변증법적이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 국민의 광범위한 논의와 동의를 거쳐 나온 가치와 규범은 그 내용뿐 아니라 형식에 있어서도 존중되어야 한다. 현재 가장 권위 있게 존중되는 규범의 표현은 헌법이지만, 권위는

15 한국에선 정치적 형태와 수준과 무관하게 공화정이 호출되었고, 그 이후 민주와 공화에 대한 진정한 논의마저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 논의의 출발은 박준혁, 「왜 그리고 어떤 공화주의인가」, 『아세아연구』 51(2008).

16 Frank Michelman, Law's Republic, 97(8), *Yale Law Journal*, 1988, p. 1502.

17 Cass Sunstein, "Beyond the Republican Revival," *97 Yale Law Journal* 1539,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1988, pp. 1541-1542.

18 C. Sunstein의 공화주의에 대하여서는 한상희, 「민주공화국의 헌법적 함의」, 『— 鑑법학』 3권(건국대학교 법과대학, 1998), 117-126쪽.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국민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모든 국민일 것이고 모든 국민은 규범의 창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상정되어야 한다. 또한, 공화주의의 접근시각 중 중요한 논쟁점 중의 하나인 정치에 관한 법의 우위를 확보하는 제도를 선호하는 자유주의적 시각, 정치로부터 법이 형성된다는 전제하에 민주정치를 수용하려는 논쟁점인데, 이는 헌법을 포함하는 규범은 사회구성원에 의해 발견되는 질서이기에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한계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토론과 심의를 통해서 극복되어야 한다. 더불어 변화의 속도와 범위는 주어진 정치체도의 틀 안에서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의 요구들이 합의된 절차와 방법까지도 바꾸어버릴 수 있다는 점을 수용해야 한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인민주권'과 '참여의 실천'을 위한 상이한 정치적 의제나 시공간을 통시적인 원리로 걸치는 인식론적 이해와 접근에 대해서는 정확한 시각이 필요하다.

대표나 대의하지 못하는 대의제를 교정하는 공화주의가 갖는 원리는 민주성과 법치주의에 그리고 사회국가원칙이 있다. 사회국가원리는 '인간 존엄성의 보호'를 통해서 공화주의 구성원리로서 특별한 가치를 갖게 된다. '사회적'이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고 하는 단순한 집합체적 의미가 아닌, 경제적 정치적 구조와 관련된 사회 내에서의 인간적인 관계를 조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안녕과 공공에 기여한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서 공동체 내에서 상대적 약자들이 비인간적인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막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정의란 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정치경제 구조 속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개념이다. 그러나 국가의 기능은 개인의 자기책임과 사회적 자율성을 우선시하며, 이러한 개인과 사회의 노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때에만 국가가 나서

부차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고 사회적 대립을 조정해야 한다.¹⁹

IV. 한국에서 ‘인권의 정치’를 위한 공화주의

1. 한국에서 민주공화주의

헌법의 민주공화국이 자유주의 관념만으로 대체되고 있다면 18-19세기 적 담론이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셈이다. 공화주의 모델이 인민에 의한 ‘사회의 자율기능 존중’과 인민주권에 의한 ‘사회의 국가 지향적 활동영역’의 확대라는 내연과 외연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민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기에 더 그 원리와 멀다. 국가가 공공의 것이며 시민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거나 정당화할 이론은 필요 없다. 시민은 누구로부터 권리를 인정받아야 할 객체도 아니다. 국가에서 시민은 객체가 아닌 주체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의 헌법은 혁명적 정치과정을 거치지도 않았으며, 인민의 합의도 아닌 단지 특정 엘리트의 관념만이 반영된 수용의 산물이었다.

한국에선 개인의 인권은 억압되었으며 이는 곧 개인이 개인으로 독립적으로 승인받지 못하는 권력정치²⁰의 대상에 불과했었다. 이해당사자인 시민

19 헌법 제119조는 대표적인 사회적 국가임을 나타내고 있다. 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0 ‘권력정치(power politics)’는 상호소통적인 정치가 아닌 권력을 통한 전략적 행위를 지향하는 것이 원인이며, 이는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개인과 집단들의 힘이 충돌하는 ‘권력정치’가 한국정치 현장에서 여전히 득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동수, 「민주화 이후 공화 민주주

은 객체로 있으며 그들과 무관하게 법률과 규범은 제정되고 집행된다. 민주적 참여 없이 법치가 강제되고 있는 셈이다. 상호이해를 추구하는 의사소통의 힘이 아닌 강제적인 힘만 잔존하고 있기에 정치적 신뢰는 낮고 법치에 대한 저항이 강하다. 의사소통적 권력은 의회 안의 내부적 공공영역과 의회 밖의 외부적 공공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긴장과 협력의 양방향적 토론정치를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이러한 양방향적 토론정치의 활성화야말로 정치 권력이 생활세계를 침범하는 식민화를 차단할 수 있다. 공화주의의 중핵은 공적 영역에 시민이 참가하는 것이고 이는 인간의 본질적인 측면이며 공동체성의 근본을 이룬다고 생각한다. 또한, 시민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공동선에 호소하여야 하는데 이를 통하여 정치의 도덕화가 이루어지며 민주주의가 달성되기 때문이다.

인권이 권리로서 굴레서 벗어난 인간을 원자화를 승인하고 이에 따른 개인의 불가침의 사적 영역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법치적 인권론이라고 한다면, 공화주의에서 인권은 탈개인주의적 혹은 관계론적 의미에서 파악해야 하는 인간이 인권을 행사하여 비국가적 공공영역을 형성하는 인권이다. 이제 공화주의를 위한 인권은 사적 영역으로서의 인권이 아니라 정치참가의 구성요소의 전제조건으로 이해한다. 권리라는 근대적 언어는 통치의 보장을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국가중심적 정치와 분리할 수 없다. 공적인 강제력을 갖는 법 아래 인간의 권리, 이를 통해 각자가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이들의 간섭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태가 권리인 것이다.

국민이 단순히 나라의 주인이라는 이념이 아닌 사실에서 자기에 대한 지배 의지를 갖게 하고 이들에 의해서 작성되는 규범이 정당성을 갖게

의의 재발견」,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제6권 2호(2007), 9쪽.

하는 게 어떤 근거로도 타당성과 정당성을 가질 것이다. 단지 투표권으로 통치자와 피통치자가 동일하다는 민주정의 논리만으로 지배자의 독점체제를 제한할 수는 없다. 인권의 정치에서 갖는 정치참여는 단지 선거에서 투표권을 갖는 게 아닌 정치적 공론형성에 참여하기 위한 권리이다. 공론형성을 위한 의사소통적 인권으로 재인식할 것을 주장하는 공화주의는 권리 투쟁을 실천적 매개로 삼고 있는 정치사회이론이다.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이라는 추상적 인간상에 기초한 시민적인 인권론보다는 자기소외와 계급적 존재로부터의 해방을 지향해야 한다. 이제 헌법은 사적인 영역에서의 실체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문서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정치참가와 통치의 절차를 구성하고 제도화한 문서로서 이해한다.

오늘날 국가형태에 관한 논의는 일정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나름의 이념적 정향에 의거하여 형성되는 것임을 고려하는 논리적이거나 이념적 기반이 없다. 인민에게 국가권력의 원천이 있다는 규범론적인 전제는 사라지고 단지 통치원리의 구조성과 질서로서만 공화주의의 필요성만이 전개되어 있다. 민주공화국의 지배적인 관념은 인민들의 자기 지배의 원칙을 바탕으로, 민주국가의 원리, 그리고 법치국가 등의 원리들이 중층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화주의 정치이론은 정치적 참여권을 인권의 중심에 놓고 정신적·물질적 측면에서 비지배자유를 확보하는 제도들을 고안함으로써 민주정치의 원리를 규범의 핵심에 두고자 한다. 그러므로 인권을 위한 공화주의적 접근에서는 공사의 영역에서 합리적인 대화와 심의과정에 참여하는 과정이 곧 정치이며 이 과정에 평등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권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된다면 인권이 정치에 대한 보편적 권리, 즉 정치체에 속하고 정치체를 창설할 권리에 기초한다. 인민이 위임하지 않은 정치적 능력, 그리고 이로부터 인민을 구성하는 개인들에게

수반된 책임이다. 곧 '인권의 정치'는 해방의 정치, 즉 '정치에 대한 보편적 권리'개념을 통해 인간인 한 우리는 모두 조건 없이 시민이며, 정치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역설한다. 인간성은 그 자체로 주어진 것이 아니며, 권리 또한 인간 본성이나 초월적 권위에 기초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므로 권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행위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들의 주장에 의해 획득된다.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기 에 '이성적인 인간만이 시민이다'와 같은 방식으로 인간에 대한 정의를 통해 시민의 권리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부정성과 호혜성을 그 원리로 갖는 모든 인간이 시민인 시민성이 인간의 본질을 규정한다. 인권은 호혜성의 원리 바깥에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한국 인권의 정치 지형과 실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규정은 대한민국의 조직원리와 그 작동의 이념적·실천적 지표를 형성하고 있다. 상해임시정부 임시헌장(1919년 4월 11일)과 제헌헌법(1948년 7월 17일)에서 표현된 '민주공화국'은 완결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치적 토의의 출발이어야 한다. 1948년의 우리 헌법은 우리 현실과 거리가 먼 일종의 초현실주의 추상화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민주공화국의 내용물을 결정하는 현재적 원리는 무엇이고 시민의 권능은 무엇인지에 대한 출발이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결과물에 대한 수용밖에 없었다.

단지 서구의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결과물을 체제 능력과 의지와는 무관하게 수용함에 불과한 민주공화국의 도입은 불가능함을 하려는 시도 에 불과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상해임시정부의 민주공화국은 이상적이지

만 실현대상이 부재했다는 현실성이 제한되었고, 제헌헌법의 민주공화국은 이상과 실제의 부적합성이 명백하다. 즉 헌법적 체계는 규범적 전제이자 광범위한 토론을 통해 지속해서 정당성을 획득해야 할 정치적 실체라는 비판이 타당할 듯하다. 오히려 '4.19학생 의거'와 '5.18민주 항쟁'에서 그리고 6월 항쟁에서 얻어낸 것은 헌법적 규범에서 벗어난 항거가 얻어낸 결과물이다. 또한, 2016년 10월부터 진행된 박근혜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집회에 대한 함의는 탄핵결과보다는 중요한 정치적 의제에 대한 대표들의 외면이 시민들에 의해 제기되고 그 과정이 정치적 결과로 유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²¹ 또한, 민주공화국은 인권이 제기하는 '자기 지배'의 원리가 공동체에서 작동될 수 있는 체계 능력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자기 지배'는 대의제 지향의 민주정치로 인해서 자치권과 자율권, 그리고 자기 결정권은 유보적이다.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타자와의 관계에서는 자유로운 계약관계에 있기 위해서는 수동적인 국가에 능동적인 주권자여야 하는데 과연 한국에서 실정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과 답이 '인권의 정치'를 위한 공화주의이다. 2008년 이후 현실적으로 한국정치는 국회와 시민행동의 이중권력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이는 시민 행동주의의 원천인 공화주의가 권리를 가질 권리인 인권에서 출발함을 보여주는 출발점인 셈이다. 그래서 한국의 공화정은 우리들의 역사와 경험을 모두 포괄하기에 그리스·로마적인 전통과는 무관한 새로운 공화주의여야 한다.

인간의 선호나 취향, 또는 그에 바탕을 두는 이해관계나 의견은 언제나 맥락적이고 상황관련적이다. 사회는 인간의 상호의존성과 상호이해적 관

21 우리 헌법에 저항권이 부재하지만, 헌법적 질서 내에서 이뤄진 촛불집회는 공동체의 존속과 안정을 바라는 시민의식을 깨우고 한국적 민주공화정을 여는 시발점이 되었다.

계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또한, 인간은 다양한 욕망에 비해 개인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자신의 능력으로 충족시킬 수 없는 욕망은 사회를 통해, 즉 각자의 상호부조를 통해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간은 사회에 속할 수밖에 없으며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필수적인 사회적 친화감을 자신의 마음속에 가져야 한다. 이러한 인간의 욕망과 요구를 적절하게 실현시키고 관리하기 위해서 국가를 갖는다. 이러한 실현체인 국가는 사회 원리를 반영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특정 세력에 의한 특정 이념만이 반영된다면 사회와 국가는 공동체 구성원의 것이 아닌 도구화로 전락된 것이다. 헌법은 국가를 구성하기 위한 구성원들 상호 간에 맺은 계약이다. 모든 권력이 헌법 안에 포함되고 이 규범으로 시민을 통제하고 또한 시민은 헌법을 근거로 정부를 통제하므로 통제권과 헌법제정권은 동일하다. 인민주권이라는 정치적 이상의 출현과 함께 대두된 현대적 의미의 공화주의가 민족주의와 자기 지배에 대한 열정이 부재했고, 공화주의에서 다원성에 기반을 둔 시민적 덕성이 동일성과 통합만을 강조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전락하였다. 그래서 국가나 정부, 그리고 대표나 엘리트들은 오로지 선재(先在)하는 개인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물로 보는 일종의 필요악으로 간주하기 일쑤다.

이제 정치적 기본권의 확보와 행사가 주된 목표가 된다. 4-5년에 한 번씩 행사되는 선거권의 주권이 아니라 국가권력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행사하는 주권이어야 한다. 국민발안권, 국민소환권, 국민표결권을 포함하는 인민(peuple)주권의 실질적 내용은 인민주권의 내용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영역과 비국가적 공공영역에서의 공론형성을 위한 인권으로 이해되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주의적 헌법학에서는 간접민주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직접민주적 요소의 도입을 정당화하지만, 시민사회적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는 정치참가의 권리

로서 정당화되는 것이다. 시민의 정치참가와 권력감시가 좀 더 용이하게 되기 위해서는 분권화가 필수 불가결하다. 분권화에 기초한 지방자치 차원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기본권 담지자 시민들의 사회적 소통양식으로 자리 잡기 위한 좋은 본보기일 것이다.²²

이 글은 인권 지상주의로의 이행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정치의 제도화 원천으로 인권을 그 원리로 공화주의를 기반하는 것이기에 이는 곧 시민참여를 전제로 한 사회적 기본권의 확대임을 주장한다. 인권에 대한 규범과 기구들은 국가에 의해서 혹은 법률적 보장에만 만족해야 하난 '도구화'에 머무는 한국 사회에 대한 무엇이 더 효과적이고 사람 중심적인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태적이고 추상적이지 않은 지금의 문제에 대한 원칙이나 원리를 제공하는 원천으로 인권의 정치를 설정하고 이는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공화주의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단지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선거에 동의하는 게 한정되는 게 아닌 시민 스스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동시에 모든 의제에 심의와 토론을 할 수 있는 공간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세습되거나 기존의 권리로 고착된 상속권으로서의 기존의 원리와 인간의 권리는 양립할 수 없다. 인권은 특정한 정체성의 담지자인 정치행위자가 자신과 근원적 불일치를 주장할 권리이자 열외자로서 자신이 사회 자체의 보편성 주체라고 상정할 권리다. 시민참여와 사적 지배 방지라는 시민 중심적 견제력 행사를 위한 제도기획은 본 논문에서는 다음 작업으로 남겨두고자 한다. 헌법의 민주공화국은 단지 제도기획으로 종결된 게 아니라 지속적인 공적 토론과 심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들이다.

22 국순옥, 「민주주의와 헌법실천」, 『민주법학』 제16호(관악사, 1999), 142쪽.

V. 결론

법치가 정태적이라면 인권의 정치는 동태적이다. 지금 분배와 공유를 인간 존엄성에 기반하는 동등성이 즉각적으로 투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의 정치는 자기 몫을 주장하지 못하거나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분배할 수 있는 정치적 이념으로 공화주의를 향하게 하는 ‘인민주권론’의 토양이다. 지배자가 바라는 대상은 사유능력과 자아의식이 결핍된 신민들이다. 대의제와 참여 없는 공화주의에서 시민은 신민이거나 사유능력이 결핍된 신민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인권은 권력의 개입이 없는 사적 공간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됐으며, 인간의 유적 존재성이야말로 인권을 저해하는 공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는 개인과 국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구분을 전제로 하는 자유주의적 헌법학의 이해에 기초한 것으로 인간의 유적 존재성의 부정에 다름 아니다.

공화국에서 인권은 어떤 의제를 결정하는 힘이 아닌 그 성찰적이고 고려해야 할 그 자체로서 전제조건이다. 공사 영역에 따른 정치영역이 아닌 시공간에 따른 생활관계에서 연대와 포함을 위한 관계망들에 의해 투영되는 것이다. 어떠한 결정들에 의해 혹은 그 결정에서 나오는 힘으로 자신의 삶을 구성해 나가는 것이 아닌, 그 성찰의 공간내지 과정에서 획득되는 자기 삶의 지향으로서 자신의 욕구를 형성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일련의 생활 과정의 지도이념으로 질서화하는 것이 자기 지배의 원리다. 인권에 의한 인권에 토대를 둔 공화주의는 다양한 선호를 정책으로 전환하는 결과 중심이 아니라 선호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토론과 숙의를 통하여 스스로를 공동체의 분배와 공유과정 속으로 유입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대의제도 동일하게 최종적인 제도나 가치가 아닐지라도 지금을

대표하려면 동태적인 맥락이 아닌 과정적이고 중첩적인 다수의 의지가 투입될 수 있는 토의와 심의의 과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인간의 존엄에 대한 근본으로부터 나와 너에 대한 인식의 틀을 만들고 추상적인 것과 동시에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게 정치이고 현실이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 인권의 보장과 실현은 공동체 최우선의 목표다. 인권에 의한, 인권을 위한 정치만이 전통적 불평등, 새로운 불평등을 교정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사회관계에서 비지배적 자유를 목표로 하는 공화주의는 대의제가 갖는 무반응성과 무책임성에 대한 실천적 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지적인 추구를 지속적으로 해내야 한다. 비지배적 상호성이 기초하고 있는 고전적 공화주의, 그리고 아테네의 민주정과 로마공화정의 정치적 원칙들은 지금까지 간과해왔거나 아직 한국학계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지 못한 내용이다.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 주체로서 시민의 주체적 참여를 통해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전제조건이 되는 공동체 추구가 목표다. 세 번째, 자신의 삶에 대한 행복추구와 주변에 대한 환경에 대한 개선은 타의나 공동체의 덕성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기에 자의지를 향상시키고 ‘비지배적 자유’와 ‘공적 심의 영역의 확장’을 통하여 사회관계망을 개선시킬 시민의식을 제고시켜야 한다.

한국사회의 미래사회의 변혁이 지향할 전략적 지표를 시민 참여적 공화주의로 삼는다면 이를 위한 규범적 실천은 ‘인민의 자기 지배’를 위해서 시민사회의 능력과 다양성의 확충과 이를 위한 다양한 정치참여의 길을 통해서 다원적 가치가 개입되는 인권을 화두로 하여 마련하는 것이다. 인권의 확대라는 운동의 방향은 현존하는 개인들의 자유나 현존하는 ‘대표나 위임’의 정치적 형식의 활성화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것’의 확대.’

사회적인 것'의 확대, '정치적인 것'의 확대가 융합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단순한 권력과정인 아닌 대다수의 권력과정인 '정치화'의 과정이 답이다. 누구나 존중받고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과정의 참여에 제한받지 않는 인권의 정치를 위한 공화주의가 한국 사회가 가진 불평등을 완전히 해소하거나 대의제가 갖는 한계를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을지라도 열린 자세로 원리를 고찰한다면 지금의 문제해결에 대한 반성력과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에티엔 발리바르 저, 윤소영 역,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 평등과 자유의 현대적 변증법」, 『'인권의 정치'와 성적 차이』, 도서출판 공감, 2003, 117-126쪽.
자크 랑시에르 저, 오윤성 역, 『감성의 분할: 미학과 정치』, 도서출판b, 2008.
정정훈, 『인권과 인권들: 정치의 원점과 인권의 영속혁명』, 그린비, 2014.

Arendt, H.,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New York: Harcourt, Brace, 1951.
Mead, George Herbert, *Mind, self, and society: from the standpoint of a social behaviorist*.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34(나은영 역, 『정신·자아·사회』. 한길사, 2010).
Ranciere, Jacques, *Aux bords du politique*. Osiris, 1990(양창렬 역,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길, 2008).
Riedel, M., *Materialien zu Hegels Rechtsphilosophie*. 2 Bde. Frankfurt/M. 1974(황태연 역, 『헤겔의 사회철학』. 한울, 1998).

2. 논문

곽준혁,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3호, 2005, 500-551쪽.
국순옥, 「민주주의와 헌법실천」, 『민주법학』 제16호, 1999, 142쪽.
김기곤, 「인권정치의 공간적 해석」, 『민주주의와 인권』 제10권 2호, 2010, 68쪽.
박기순, 「인권의 정치와 인도주의」, 『월간 좌파』 제18호, 2014, 90-91쪽.
박주원, 「인권의 '정치적' 재구성: 자유권, 사회권을 넘어 정치적 권리로, 국민주권을 넘어 새로운 정치적 주권을 향하여」, 『현상과 인식』 제37권 4호, 2013, 31쪽.
신철희, 「'민(demos)' 개념의 이중성과 민주주의(demokratia)의 기원」, 『한국정치연구』 제22집 제2호, 2013, 207쪽.
이경주, 「시민사회적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법학』 18호, 2000, 77쪽.
이재승, 「하버마스의 법철학」, 『민주법학』 12호, 1997, 186쪽.
이재호, 「근대적 인권 이념의 기초와 한계」, 『정신문화연구』 제29권 제3호, 2006, 198-199쪽.

장은주, 「문화적 차이와 인권: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철학연구』 제49호, 2000, 155-178쪽.

조효제, 「한국의 반공주의와 인권」. 김동춘·기외르기 스텔·크리스토프 폴만 외, 『반공의 시대: 한국과 독일, 냉전의 정치』, 돌베개, 2015, 369-389쪽.

한상희, 「민주공화국의 의미: 그 공화주의적 실천규범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학 연구』, 제9권 제2호, 2003, 27-91쪽.

_____, 「민주공화국의 헌법적 함의」. 『一鑑법학』 3권, 1998, 27-91쪽.

Castoriadis, C., "Sur le Contenu du Socialism" *Le Contenu du Socialism*, Edition 10/18, 1979, p. 26.

Michelman, Frank, "Law's Republic" 97(8) *Yale Law Journal*, 1988, p. 1502.

Ranciere, Jacques, "Who Is the Subject of the Rights of Man?" in *South Atlantic Quarterly*, 103(2-3), 2004, p. 299.

Sunstein, Cass, "Beyond the Republican Revival" 97(8) *Yale Law Journal* 1539,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1988, pp. 1541-1542.

국문초록

이 글은 인권은 정치적 주권의 문제와 연결됨을 논함으로써 그 권리의 핵심이 단지 개별 인간의 주관적 권리요청으로만이 아님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인권은 자연법이나 사회계약으로 획득되는 게 아닌 다른 정치체를 구상할 수 있는 근거로서, 즉 '정치적'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동시에 인권의 기반이 개인에게 있지 않고 사회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이 글은 인권의 전개과정은 필연적으로 정치체를 형성하는 국가와 사회의 관계 양상을 둘러싸고 진행될 수밖에 없었으며, 그에 따라 근대적 인권의 발달과정이 자유권과 사회권, 정치권의 내용과 범위, 관계를 둘러싸고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개체의 권리는 정치과정에서 획득되고 확장되고 심화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인권의 정치와 공화주의는 정치 이전의 권력정치의 산물이 아닌 정치과정의 산물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즉 어떠한 정치공동체를 지향하느냐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개인과 사회와 국가가 맺는 관계 자체의 재구성 문제로 제기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권리의 확대는 권리의 영역을 경계 짓고 한정된 영역을 특권화하는 권력에 대한 투쟁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이며 나아가 개인의 행위가 연결되고 관계 맺는 방식 자체를, 즉 새로운 정치체를 구성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행위이다.

투고일 2019. 9. 19.

심사일 2019. 10. 13.

게재 확정일 2019. 11. 21.

주제어(keyword) 인권(Human Rights), 공화주의의 개념(concepts of the republic), 공화주의(Rеспублиanism), 자유주의(Liberalism), 사회권(Social Right), 비지배(Non-Domination), 공적영역과 덕성(public sphere & Virtue), 정체성(identity)

Abstracts

Republicanism Politics for Human Rights

Rhee, Jae-ho

This article attempts to justify the republic in a non-violent perspective, and shows that human rights are linked to the problem of political sovereignty, so that the core of that right can not be represented solely by individual human requests for subjective rights. Human rights should be raised as 'political' as a basis for envisioning a political entity other than a natural law or a social contract. At the same time, we want to make sure that the foundation of human rights is not in individuals but in society.

In this article,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human rights inevitably involves the aspec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society that form the political body, and accordingly,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modern human rights is divided into the content, scope, and relationship of liberty. It was seen that it was surrounded. The rights of individuals are acquired, expanded and deepened in the political process. Therefore, it has been argued that human rights should be understood as a process of successive expansion parallel to other rights by the gradual expansion and deepening of human rights in republicanism, since it is hard to faithfully fulfill in the political system represented or represented by someone.

Therefore, in Korea, the politics of human rights and republicanism are the product of the political process, not the product of pre-political power politics. In other words, what kind of political community is needed to be raised as a matter of reconfigu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society and state from a wider perspective. The expansion of such rights is 'political' in the sense that it is a struggle for the power that bounds the domain of rights and privileges the limited domain, and furthermore, it is the direction that the individual's actions are connected and the way they are related, Is a 'political' act.